

『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7월 7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7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7월 18일

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2017년 8월 구미낙동강 승마길 개장에 따라 낙동강 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며, 승마길 및 하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예우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위치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개방시간,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, 입장제한(안 제4조~제6조)
- 오물 발생 최소한의 노력, 오물 처리 방법 및 재활용
(안 제7조~제8조)
- 오물 수거 수수료 부과·징수, 오물 수거 수수료 감면, 오물 수거
수수료 반환, 세입조치 등(안 제9조~제12조)
- 사용절차와 방법, 사용자의 준수사항(안 제13조~제14조)
- 예산지원 등(안 제15조)
- 원상복구, 질서유지 감독(안 제16조~제17조)
- 위탁 관리·운영(안 제18조)
- 준용, 시행규칙(안 제19조~제2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, 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」,
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2017년 8월경 개장하는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용절차와 방법, 사용자 준수사항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